

문서번호 : 15-12-민변-04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전송일자 : 2015. 12. 3.(목)
전송매수 : 총 1 쪽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채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하여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이 계속될 경우 범대위가 예정된 시각에 집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범대위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반면,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집회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집회·시위를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 집회를 충실히 보장하고, 차벽 설치·물포 및 최루액 살수 등 집회 참가자들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광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공권력남용 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